2025년 창업·벤처기업 육정사업 통합 모집 공고

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, (재)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창업·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> 2025년 3월 제주특별까지도지사 (재)제주테크노파크 원장

모집 개요

- □목 쩍
 - 핵심기술(제품·서비스)을 보유한 제주지역 내 창업·벤처·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및 기업 성장 도모
- □ 지원대상
- 제주지역 내 사업장(본사)을 소지한 창업·벤처·중소기업
 - ※ 지원유형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사전 지원대상 확인 必
- □ 지원내용
- 기술+사업화 통합지원, 사업화지원, 입점지원 등
- □ 협약기간
- 협약 후 6개월 이내('25년 5월 ~ 10월(예정))
 - ※ 지원사업별 사업기간 상이
- □ 선정규모
- 총 20개사 내외(2개 지원사업 총 170,000천원)

II 모집분야

지원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지원금 (기업당)	모집규모	기업부담금
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	창업기업 (창업 7년 이내)	1) 신청기업 대상 방문 컨설팅 지원 2) 기술+사업화 통합 지원	최대 10백만원	10개사 내외	지원금의 20% 이상
벤처기업 사업확 지원	WI+1710	1)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	최대 15백만원	3개사 내외	지원금의 10% 이상
	벤처기업	2) 마케팅 지원	최대 8백만원	2개사 내외	
벤처나라 입점지원	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(창업 7년 이내)	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컨설팅 지원	1.8백만원 상당	5개사 내외	-

- 세부 지원내용은 [붙임 2.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]에서 확인 가능
- 기업당 1개 지원사업만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
- 벤처나라 입점지원 제외(중복신청 가능)
- 동일한 지원사업의 직전년도(2024년) 수혜기업은 지원 제외



□ 신청자격

창업기업

「중소기업항업 지원법」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 자

- *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* 법인사업자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- *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제외대상'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벤처기업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제2쪼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

- * 제주지역 내 사업장(본사)을 오지하고 지원사업 종료일(2025.10.31.(예정)) 까지 벤처기업 인증이 유효한 기업
- *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지원사업 종료일(2025.10.31.(예정)) 이전에 만료된 기업은 반드시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어야함

중소기업

제주지역 내 시업장(본사)을 소지하고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상의 중소기업

□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- 신청된 과제계획이 기 추진되어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- 제주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정관 및 운영 제규정 사업관리 지침 제10조(선정평가 제외 대상)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, 사업 선정평가에서 제외
-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- 1.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증 의무사항 불이행
- 2. 사업참여 신청자가 재단의 기술료, 정산금 또는 환수금, 임대료, 관리비, 장비 시설 이용료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(단, 사업공고 마감일까지 납부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)
- ② 「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」및「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」,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③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- 1.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2. 법정관리·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(개인 회생·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, 면책권자 포함)
- 3.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기업(다만,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)
- 4.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, 부적정"인 경우

□ 근거법령 및 규정

○ (재)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

□ 선정기업의 의무

-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, 사업비 사용 시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을 원칙으로 함
- 총 사업비 구성 예시(기업지원비 대비 기업부담금 매칭)
 - (예시) 기업부담금(=기업 대응자금): 기업지원비의 10% 이상의 현금

< 총 사업비 구성(예시) >

구분	총 사업비	지원금	기업 대응자금(현금)
구성내역	총 사업비	최종결정 지원금	지원금의 현금 10% 이상
에시	1,100만원	1,000만원	100만원

IV 명가 및 선정

□ 지원사업별 평가방법

- (1차) 제출서류 누락, 신청자격 확인 등 서류 검토
- (2차) 지원사업별 개별 평가

지원사업명	평가방법
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	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진단(평가X) → 발표평가
벤처기업 사업화 지원	발표평가
벤처나라 입점지원	서면평가(적합성평가)

□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

-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평가 진행
 - 평가 점수는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 또는 합산한 산술평균 점수로 계산 ※ 지원유형별 상이
 - 평가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기업 중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, 60점 미만은 지원제외로 분류
 - 평가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통해 지원규모 및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※ 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은 내부 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□ 평가지표

- ※ 동점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, 벤처기업 사업화 지원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 껌
기업역량 (20점)	① 대표자의 혁신 마인드 및 추진의지	20
사업성	②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	30
(50점)	③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합리성(전략, 사업기간, 사업비 등)	20
기대효과	④ 성과창출 가능성(고용, 매출, 투자유치 등)	20
(30점)	⑤ 생산성 및 기업성장 기대효과	10
	합 계	100

○ 벤처나라 입점지원

평가항목	평가지표	평가(진단)결과
1. 지원 필요성	① CEO의 혁신 마인드 및 추진의지	적합 / 부적합
	②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	적합 / 부적합
2. 성장 가능성	③ 기술혁신성(기반·활동·성과)	적합 / 부적합
	④ 사업성장성(기반·활동·성과)	적합 / 부적합
3. 기대효과	⑤ 지속가능·발전에 대한 노력	적합 / 부적합
	⑥ 결과물의 활용계획의 우수성	적합 / 부적합
	적합 / 부적합	

※ 예산범위 보다 많은 기업이 적합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(적합)→ 지원 필요성(적합) → 기대효과(적합) 순으로 최종 지원기업 선정

□ 가껌사항

지원사업명	가점사항	
혁신장업 성장 맞춤형 지원	ESG경영수준확인서	2점
벤처기업 사업화 지원	벤처촉진지구 내 벤처기업	5점
편시기합 시합되 시원	ESG경영수준확인서	2점
벤처나라 입점지원	해당없음	

- (재)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 지침 제11조에 의거하여 최대 5점 이내 가산점 부여
-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우대사항(가점 5점)
 - 제주 벤처촉진지구 지번: [붙임 2.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]에서 확인 가능
- ESG경영수준확인서 제출 기업 우대사항(가점 2점)
 - 중소벤처기업의 ESG경영 도입 이행 수준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제도
 -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급한 ESG경영수준확인서에 한해 가점 인정

Ⅴ 사업 추진절차

□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

추진절차	기간	주요 내용
통합 모집공고	3. 13. ~ 3. 27.	• 창업·벤처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
+		
신청 · 접수	3. 13. ~ 3. 27.	• 제주산업정보서비스(JEIS) 온라인 신청·접수
+		
선정평가	4. 7. ~	• 지원유형에 따라 평가 방식 상이 ※ 평가방법 및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
+		
결과통보	평가 후 1주 이내	• 평가 결과 개별 통보
+		
협약제결 및 사업비 지급(1차)	통보 후 2주 이내	• 지원유형에 따라 협약체결 방법 및 사업비 지급 시기 상이 ※ 협약체결 일정 개별 통보 예정
+		
중간점검 및 사업비 지급(2차)	8월 예정	• 지원유형에 따라 중간점검 방법 및 사업비 지급 시기 상이 ※ 중간점검 방법 일정 개별 통보 예정
+		
최종평가	11월 중	• 지원사업 최종평가 • 사업비 사용내역 검수 및 정산
+		
성과 및 만쪽도 쪼사	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	•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및 만족도조사 실시

※ 상기 일정은 신청 규모 및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VI 신청·접수방법 및 문의처

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**(모집기간)** 2025. 3. 13.(목) ~ 3. 27.(목) 18:00 까지
- (신청·접수기간) 2025. 3. 13.(목) ~ 3. 27.(목) 18:00 까지
- (신청서교부) 제주TP 홈페이지 공지사항(사업정보)에서 다운로드
- (신청방법) 제주산업정보서비스(JEIS) 온라인 신청·접수

온라인 접수방법

- O (재)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(http://jeis.or.kr) 접속
- 대표자(또는 과제책임자) ID/Password로 로그인 (필요시 회원가입)
- 상단 좌측메뉴에서 '지원사업' ⇨ '해당사업(접수중)' 클릭 ⇨ '사업신청 ' 클릭
- 상세화면으로 이동 ⇨ 각 항목 입력/저장 ⇨ 제출서류 업로드 ⇨ '등록' 클릭

□ 문의처

구분	문의채			
제주산업정보 서비스(JEIS)	기업지원단 정보화지원팀		Tel. 064-720-3066	
지원사업 문의	혁신창업 성장 맞춤형 지원	기업지원단 지역사업추진팀	Tel. 064-720-3060	
	벤처기업 사업화 지원	기업지원단	Tel. 064-720-3089	
	벤처기업 입점지원	지역사업추진팀	Tel. 004-720-3009	

WI 제출서류

□ 제출서류

공통필수제출서류	
① 사업 신청서(소정양식)	1부
② 개인(기업)정보 수집 · 이용동의서	1부
③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	1부
④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(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)	1부
기타해당기업제출서류	
⑤ 가점서류(ESG경영수준확인서)	1부

- 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※ 각 제출서류는 요청분량으로 작성하되 최종적으로 하나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
- ※ 신청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서류는 간소화하였으며, 최종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
- ※ 각 사업별 필수서류 및 선택제출서류가 상이함으로 확인必(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VIII 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(선정)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(선정)기업은 공고문 및 지침(기준), 기타 (제)제주테크노파크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
- 신청 마감 시간까지 사업신청 완료한 신청자에 한해 평가 참여 가능

□ 평가 시 유의사항

○ 평가 과정에서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, 불참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,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(재)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(재)제주테크노파크는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과 같은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지원금은 기업의 대응자금 납부 및 협약체결 후, 지급되며 협약체결 전 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자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②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, 휴·폐업 등의 경우 협약취소, 사업 중단 (사업비 회수)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함
- 선정기업은 (재)제주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(재)제주테크노파크의 안내에 따라 협약(설명회 등)체결,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